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주)머스트자산운용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14.11.26.

개정 2016.02.19.

개정 2016.10.06.

개정 2021.08.06.

개정 2024.12.19.

**제1조(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 (주)머스트자산운용(이하“회사”라 한다)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과 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나.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다.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업무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바. 성과보수: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로서 법 제86조,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산정방식에 따라 정의된 경우 수령하는 보수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

판매 수수료로 구분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 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됨

다.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및 투자자문 기본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자문자산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관계 없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라.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및 투자자문 성과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마. 기타수수료: 회사가 신고 또는 보고한 경영업무,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 체계)**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형 : 기본수수료만 지급
2. 혼합형 :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지급
3. 성과형 : 성과수수료만 지급

②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③ 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혼합형, 성과형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본형보수 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 투자일임 또는 자문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미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④ 투자일임 또는 자문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⑤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운용경과 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성과보수는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부과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적용에 있어 수수료를 선취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중도 해지된 금액의 계약기간 미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최초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규약, 투자자문(일임)계약 및 기타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④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담당부서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10.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